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06 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:김성원·김선교·박성훈

조승환 • 이종배 • 정동만

김소희 · 임이자 · 이인선

고동진 • 박충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·사기업체(公·私企業體) 또는 공·사단체(公·社團體)를 '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'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또,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0조의2(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등의 지정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 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공·사기업체(公·私企業體) 또는 공·사단체(公·社團體)에 대하여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등의 지정(이하 "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"이라 한다)을 할수 있다.
 - ②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공·사기업체(公·私企業體) 또는 공·사단체(公·社團體)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.
 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은 공・사기업체(公・私企業體) 또는 공・사단체(公・社團體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및단체

등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은 공·사기업체(公·私企業體) 또는 공·사단체(公·社團體)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및단체 등지정의 기준·절차, 유효기간,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신 설>제40조의2(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등의 지정) ① 국가보훈부장 관은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공・사기업체(公・私企業體) 또는 공・사단체(公・社團體)에 대하여 고용 우수 기업및 단체등의 지정(이하 "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②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
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공・사기업체(公・私企業體) 또는 공・사단체(公・社團

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 단체등지정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.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 정을 받은 공・사기업체(公・ 私企業體) 또는 공・사단체(公 ・社團體)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은 공·사기업체(公·私企業 體) 또는 공·사단체(公·社團 體)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

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 <u>야 한다.</u>

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 업및단체등지정의 기준·절차, 유효기간,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